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초기(6개월 이내)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면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건 완화

그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휴·폐업, 도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사업장 변경 처리기한 설정

그간 사업장 변경 신청의 경우 처리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사업장

변경 처분의 처리기간 15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라. 고용허가서 신청서 상의 유의사항 문구 추가

’21.1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등의 숙소 제공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서 신청서 상 ‘주택 제공’, ‘숙박시설 미제공’ 등으로 표기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이후에는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상황이므로,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숙박시설 유형을 실제로 제공하는 유형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숙박시설을 미제공하기로 한 이후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마. 민원 서식의 ‘고용센터’ 표기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수정

외국인 고용허가 업무는 고용센터가 아닌 지청 소속 지역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 서식에 담당 부서가 ‘고용센터’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 대상 정확한 안내와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고용센터’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수정하고자 함

바.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 표기

외국인근로자가 민원 서식을 검색하거나 활용 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간편이름(약호)를 부여하고,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큐알코드를 표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7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 기간을 3일로,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을 7일로 각각”을 “제1항의 기간을 3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라도 직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장 변경 사유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고용 허가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①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 ----- --- 7일----- -----.		
1. 농업·축산업 및 어업: 7일		<삭 제>		
2. 제1호 외의 업종: 14일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을 3일로,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을 7일로 각각 단축할 수 있다.		② ----- ----- ---- 제1항의 기간을 3일로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법제 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
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③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

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
경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경
우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활
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
로자라도 직전 사업장에서의 사
업장 변경 사유가 법 제25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고
용 허가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④ -----
--- 제3항-----

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 ----- ----- ----- --.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